NARS 현안보고서 제44호 2009. 11. 10

발간등록번호 31-9735031-000639-14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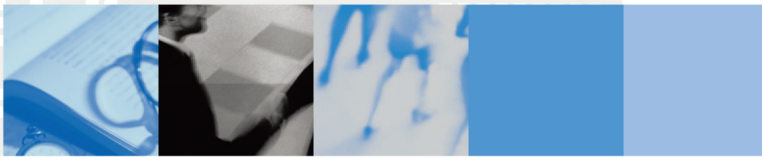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44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미국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교육과학팀 입법조사관 정환규(교육학박사)

2009. 11. 10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요 약

□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과 대입전형제도의 보완 방향에 따라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본격 운용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학부모의 진학 요구와 대학의 선발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현행 대입전형제도의 운용상 다양성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향후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대학의 운영방법과 정부를 포함한 지원체제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국민적 관심에 비하여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 가장 모범적으로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미국 대학들도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과 같은 안정된 제도를 형성했다. 개별 대학이 입학사정관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학생 선발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과 미국민의 신뢰가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첫째, 효과적인 입학사정관제 운용을 위한 다양한 공적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지침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학력검사를 운영함으로써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협의체는 회원 대학의 교육환경과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교육 및 학생선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 둘째, 입학사정관이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교육·업무절차의 전문화와 합리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학은 고유한 선발 원칙에 따라 입학사정관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학문적 능력과 업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되 다양한 인종적·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함으로써 선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으로 입학사정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학사정관이 전문적인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셋째,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에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소송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은 신뢰받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대입선발전형의 중요한 방법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적절한 지원체제를 확보해야 하며 대학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지원 과제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첫째, 정부는 현행 대입수능시험을 대입자격시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도 입학사정관에 의한 선발에 대하여 선발기준을 설정·권고하고 중등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 둘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선발·교육·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입 초창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 채용과 교육에 대하여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대학은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되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교협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넷째, 오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운영모델을 만든 미국과 달리 단기간 내에 재도로 도입·운영하려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결론적으로 대학은 입학사정관제가 우수한 잠재능력의 소유자를 다양한 경로와 각계각층에서 발굴하도록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정부는 대입선발 구조의 큰 틀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차 례

□ 요약

Ⅰ. 서 론 / 1

Ⅱ.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현황 / 4

1. 대학전형제도의 개선 필요성 ····· 4
2.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현황 ····· 8

Ⅲ. 학생 선발의 원리와 미국의 대입제도 / 12

1. 선진국 대학의 학생 선발 원리 ····· 12
2. 미국의 대입전형 제도 ····· 14

Ⅳ.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 / 17

1. 입학사정관의 역할과 관리 ····· 17
2. 입학사정관의 자율성과 책임 ····· 25

Ⅴ. 시사점과 제언 / 29

1.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 29
2.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 30

□ 참고문헌

표 차 례

[표 1] 수능 3개 영역 상위 10개교(평균 합산, 2009학년도) ····· 7
[표 2] 입학사정관의 평가 자료 ····· 10
[표 3] 입학사정관의 전형 형태(2010학년도) ····· 11
[표 4]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입학생 내신등급(2009학년도) ····· 11

[사례 1] 오레곤주립대학교 모집공고(2009.2.19) ····· 20
[사례 2] 세인트메리대학교 모집공고(2009.3.4) ····· 20
[사례 3]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모집공고(2009.3.2) ····· 21

[교육방식 1] 대규모(복수캠퍼스) 대학 ····· 22
[교육방식 2] 주립대학 ····· 22
[교육방식 3] 중·소규모의 사립대학 ····· 23

Ⅰ. 서론

□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과 대입전형제도의 보완 방향에 따라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09학년도에 전국 40개 정부 재정지원 대학에서 4년제 대학 입학정원 378,477명의 1.16%인 4,476명의 학생을 입학사정관에 의하여 선발했고[1], 2010학년도에는 전국 47개 정부 재정지원 대학에서 4년제 대학 입학정원 349,452명의 5.7%인 19,825명을 입학사정관에 의하여 선발할 예정임[2]

□ 입학사정관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진학 요구와 공급자인 대학의 선발 요구를 충족시키고 대입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에 의한 선발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 학생·학부모는 입학사정관제가 다양한 진학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은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함

○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통해 현행 수능시험 위주의 선발제도를 보완하면서 학생선발권을 단계적으로 개별 대학으로 이관할 예정임

□ 입학사정관제가 지향하는 목적은 선발 전형의 기준을 바꾸고 학생과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선발 전형의 기준 변화

- 선발 전형의 평가 기준으로 학업성취도(고교 내신성적, 수능성적 등)와 같은 인지적(cognitive) 기준 뿐만 아니라 잠재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요소들(특기적성, 봉사활동 등)도 포함함
- 선발 전형의 시점과 관련하여, 현재는 선발시점의 과거인 고교까지의 학업성

1) 대교협, 「2010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 사항」, 2009.1; 최병기, 「2010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및 효율적 대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6.
2) 교과부, 「지원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현황 및 계획」, 2009.10.

취도 평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선발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인 학생의 성장가능성(잠재능력) 평가도 또 다른 주요 평가기준이 될 것임

○ 학생과 대학의 자율성 확대

-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음
- 대학에서도 선발 후 대학 고유의 교육철학과 교육환경을 통해 성장·발달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 입학사정관은 '성적을 포함하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소질,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대입전형 전문가'로 정의되며[3], 영어로는 Admission Officer, Admission Counselor, Admission Reviewer, Admission Reader 등으로 표기함. 입학사정관 담당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전형기간: 전형자료의 분석과 평가 및 심사

○ 평상시: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의 분석, 전형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분석, 전형방법의 연구·개발

○ 입학생 관리: 학업과 적응을 위한 사후 관리 상담 서비스

□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와 대학, 정부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다양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으나 도입 초창기로서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학사정관제는 도입 및 운영 목적, 학생 선발의 방법 및 절차,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정부와 대학, 학생·학부모 간의 충분한 합의가 없이 추진되고 있음

---

3) 최병기,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분석 및 대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1.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정의함

○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정부도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제도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도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도를 정착시켰음[4)]

○ 미국의 명문 주립 및 사립대학들은 대학마다 독특한 운영방법을 개발하고 신뢰를 얻음으로써 교육 및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음

○ 개별 대학이 입학사정관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학생 선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원천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

○ 미국의 입학사정관은 법에 의하여 보편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르거나 전국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개별 대학의 고유한 방법과 관행들이 축적된 것임

□ 본 보고서는 입학사정관 선발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음으로써 도입 초창기인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바람직하게 운용되기 위한 정책 및 지원방향을 찾아보려고 함.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음

○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배경과 운용 현황 및 문제점

○ 미국의 대입전형 제도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차지하는 위상

○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의 역할과 운용 현황의 조사 및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판례 검토

○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4) 미국 이외에도 영국과 일본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의 정도와 선발의 폭이 넓지 않음

Ⅱ.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배경과 현황

1. 대입전형제도의 개선 필요성

가. 대입전형제도의 기준과 변화과정

□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고교까지의 학업 성취도

- 이 기준은 대학입학 전까지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함으로써 대학교육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학업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측정결과를 말함
- 고교 재학 중의 성취정도 평가결과(내신, 학생생활기록부 등)와 국가가 시행하는 표준화검사의 결과(수능시험)를 통해 측정함
- 이 기준은 대학이 직접 측정한 평가결과는 아니며, 대학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 시점의 평가결과를 주로 상대지표로 나타낸 것임
- 따라서 이 기준의 선택과 활용 정도는 측정 자료의 신뢰성과 대학의 자율 선발능력 간의 관계에 따를 것임

○ 둘째, 대학교육을 통한 학생의 장래 성장 가능성

- 이 기준은 학생의 지적 수준을 대학교육을 통해 일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대학의 예측을 말하며, 대학교육의 목표와 비교하여 학생 개인 능력을 절대 지표로 표시한 것임
- 이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평가기준의 정확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충분해야 하고,
- 각 대학은 고유한 대학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발전형 방법을 운영하고 선발 후 교육에 의한 성과를 보여야 함
- 또한 정부도 어느 정도까지 정책을 통한 개입과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하

여 명확히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입학전형제도(이하, 대입전형제도)는 1969학년도 이전까지는 대학의 자율로 운영되었으나, 1969년부터 1980년까지의 과도기를 거쳐 1981학년도부터는 고교까지의 학업성취 정도를 기준으로 국가가 선발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바뀌었음

○ 정부 수립 이후 1968학년도까지 대입전형제도는 1962학년도부터 1963학도까지의 대입자격국가고시제를 제외하고 대학별 단독선발제가 실시되었음

○ 1969학년도부터 1980학년도까지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입자격시험인 대학입학예비고사(이하, 예비고사제)와 대학별 본고사제(이하, 본고사제)로 운영되었으나 과열과외 등 과도한 사교육 열풍에 따른 대입전형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1학년도에 전격적으로 대입본고사가 폐지되었음

○ 1981학년도부터 1993학년도까지 대학입학학력고사(이하, 학력고사제)와 고교내신 및 대학별 면접시험이 병행되었고, 1994학년도부터 현행과 같이 대입수학능력시험제도(수능시험제)를 중심으로 고교내신과 대학별 선발전형, 수시모집이 병행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나. 대입전형제도의 개선 과제

□ 그동안의 대입전형제도는 주로 과도한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려는 정책 목표에 의하여 변화한 것이었음. 그러나 주로 상대지표로 표시된 과거의 성적평가 자료를 선발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대하여 국가가 불필요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1969학년도부터 시행된 예비고사제가 대학별 본고사를 시행하는 당시 제도에서 불필요한 절차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1학년도부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사제를 폐지하고 학력고사제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사라졌음

○ 학력고사제는 국가에 의한 대학배치시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전인 고교까지의 학업성취도만으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대학이 건학이념 및 학교특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생을 교육시킬 권리를 사전 박탈하고 있다는 대학의 반발을 받았음

○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4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행 수능시험은 대학입학 전까지의 과거 시점의 학업성취도 평가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후 수학능력도 예측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사교육 열풍, 지역 및 계층 간의 학력격차, 고교등급화 심화 및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절대 우위 현상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원래의 정책취지를 살리는데 실패했으며 여전히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최근 공개된 수능시험의 고교별 분포 결과[5]는 수능시험이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공한 학교별 수능점수 분석 결과는 특목고 중 외국어고교(이하, 외고)와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 서울 강남구 등 중상류층 밀집거주 지역 학교 등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09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의 평균 합산점수 상위 10개교는 특목고(외고) 8개교, 자립형사립고와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고가 각각 1개교씩으로 나타나 이들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특별히 높음을 알 수 있음([표 1] 참조)

5) 교육과학기술부, 「조전혁의원실 제출 자료」(조선일보, 2009.10.12), 2009.10.

[표 1] 수능 3개 영역 상위 10개교(평균 합산, 2009학년도)

학교명	학교유형	시 · 도	평균점수
대원외고	특목고	서울	401.63
민족사관고	자립형사립고	강원	397.88
한국외대부속외고	특목고	경기	394.72
한영외고	특목고	서울	392.53
명덕외고	특목고	서울	391.76
대구외고	특목고	대구	391.08
대일외고	특목고	서울	390.59
한일고	일반고(비평준화지역)	충남	388.52
부산국제고	특목고	부산	386.68
김해외고	특목고	경남	385.5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10,「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출자료」

□ 이와 같이 대입전형제도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성취를 기준으로 한 평가 및 국가관리형으로 대입전형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지역적, 계층적, 문화적으로 급속하게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가가 실시하는 표준화된 학력시험에 의하여 대학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제약을 풀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과거 시점의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대학별 특성과 요구에 따라 대학교육에 의하여 발현될 학생의 미래 잠재가능성을 예측하고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 요구에 국가가 유연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대학입학사정제도(이하, 대입사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음

○ 첫째, 기존의 대입사정제도는 학생들의 학력신장보다는 학생 상호간의 서열경쟁을 부추기는 폐단이 있음

○ 둘째, 이 제도는 대학입학 직전까지의 과거 학업성과 위주로 대학생을 선발

하여, 입학 후 대학생 개개인의 잠재가능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셋째,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고유한 교육철학 실천을 제약하고 있음

2.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현황

가. 도입

□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적성 및 능력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현행 수능시험의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입학사정관이란 '직무상 대학 내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으로 전형기간과 무관하게 연중 입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하며 기대되는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음[6)]

-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의 개인성적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대학이나 모집 단위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입학사정관에 의한 선발과정에서 대학과 학생 사이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대학의 정보공개 책무성도 향상될 수 있음

□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평가받고 대학생활을 통하여 능력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 대학의 입장에서는 입학 이전의 과거 평가자료가 아닌 대학이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가능성을 토대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6) 「대입 자율화와 입학사정관 제도」, 『교육마당21』, 2008.2.

○ 정부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용 성과에 따라 현행 대입수능제도와 같은 국가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각 대학이 건학이념과 학교발전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대교협은 2008학년도에 처음으로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2009학년도에서는 그 지원범위를 확대함[7)]

- 대교협은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신중하게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개별 대학의 학생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학생 선발 기준을 각 대학의 자율사항으로 위임함
- 입학사정관이 전형에 참여하여 평가하는 자료 및 내용은 [표 2]와 같음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09.4.9.
- 교원확보율 57.5% 이상(산업대 45% 이상), 신입생 충원률 9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 40개교를 선정(계속 지원 10개교, 신규 지원 30개교)
- 2008년 40개 대학에서 총 218명의 입학사정관을 채용
- 입학사정관은 2009학년도 각종 전형에 참여하여 총 4,401명의 학생을 선발(실제 선발인원: 4,555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09년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시행 계획」
- 선도대학 약 10개교를 포함한 40여개 대학에 총 230억원을 지원함
- 2009년 4월 지원계획 공고, 6~7월 선정평가를 거쳐 7월말 지원대학을 최종 선정
-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시 입학사정관에 의한 모집계획 발표(모집 예정인원 26,000명, 47개 대학 예정)

[표 2] 입학사정관의 평가 자료

구 분	세부 평가 내용
학생부	- 교과 성적: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여부 - 학년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 추세 - 비교과 영역: 각종 교내 활동 등
교사 추천서	- 참고자료로 활용
포트폴리오	- 학교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의 증빙자료 -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소명자료 - 예: 자기소개서(건국대), 잠재능력보고서(가톨릭대) 등
면접	- 서류 확인 - 각종 역량 평가(탐구, 대인, 내적, 특정 역량 등)

자료: 최병기,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분석 및 대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1.

나. 현황

□ 최근 공개된 자료[8]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한 대학들 중 상당수가 선발대상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지 않고 내신성적을 주요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아직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입학사정관이 전형의 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형권이 제한됨([표 3] 참조)

○ 대부분의 대학들은 내신성적과 특목고 학생을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선발에서 우대했음([표 4] 참조)

○ 내신성적을 주요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잠재력을 중시하여 학생을 선발한 대학은 인하대 1개교로 나타남(전체 35명의 선발인원 중 검정고시와 대안학교 학생을 16명 선발)

□ 따라서 아직 많은 대학들이 각 학생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선동의원실 제출 자료」, 2009.10.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고교까지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기초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남

[표 3] 입학사정관의 전형 형태(2010학년도)

구 분		실시대학(66개) 대비(207,561명)	전체 대학 대비 (382,736명)
전 과정 참여 전형	9,624명	4.64%	2.51%
부분 참여 전형	11,158명	5.38%	2.92%
전 체	**20,782명**	**10.01%**	**5.43%**

자료: 최병기,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분석 및 대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1.

[표 4]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입학생 내신등급(2009학년도)

대 학	선발인원(명)	내신 평균등급	내신 최고등급	내신 최저등급
가톨릭대	46	3.26	1.78	4.28
경북대	65	3.16	1.22	6.65
공주대	33	3.83	1.64	6.86
동국대	15	4.04	2.88	5.96
부산대	67	3.94	2.13	7.34
서울시립대	39	2.72	1.44	5.08
인하대	35	2.53	1.30	4.40
전주대	27	6.05	3.60	7.90
중앙대	29	2.48	1.00	4.45
한양대	15	3.02	1.62	5.55
홍익대	71	1.98	1.07	3.17
전체	**442**	**3.36**	**1.07**	**7.34**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선동의원실 제출 자료」, 2009.10.12.

□ 따라서 아직 도입 초기인 입학사정관제가 향후 바림직하게 운영되기 위하여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 다음 장부터는 미국 대입제도를 통해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찾아보겠음

Ⅲ. 학생 선발의 원리와 미국의 대입제도

1. 선진국 대학의 학생 선발 원리

□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교육과 연구의 자유를 보장받은 대학의 역사와 헌법정신에 따른 고유의 권리임. 오늘날에는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대학의 양적 확대가 나타나면서 국가의 개입과 정책적 지원도 커지고 있음. 미국 대학의 대입전형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대적 의미의 대입전형제도의 원리와 특징을 간략히 소개함

가. 학생 선발의 자율성과 책임

□ 선진국에서는 개별 대학이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

○ 대학입학 전형에서 모집단위와 모집주체가 세분화됨으로써 대학의 각 계열과 학과들은 그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각 모집단위와 모집주체에 따라 상이한 입학전형 기준이 요구됨으로써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반영함

○ 개별 대학은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나 이념을 기초로 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생 선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음

나. 다양한 전형자료

□ 외국의 대학입학전형에서는 여러 전형자료를 복합적으로 선택·이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함

○ 국가수준의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내신성적, 교사의 추천서, 학업외 봉사활동, 면접 등 모든 자료들이 복합적으로 이용되며, 전형자료의 선택권은 개별 대학에 있음

다. 국가수준 시험의 선택적 활용

□ 국가수준의 시험을 실시하는 국가들에서도 개별 대학 및 학과가 국가수준시험 결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함

○ 프랑스의 바깔로레아(Baccalaureat), 독일의 아비투어(Abitur), 영국의 GCE (Th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level,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은 고교과정의 많은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포함하지만, 개별 대학과 학과는 그 성적을 자율 선택하고 대학 자체의 기준과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함

- 학생은 미리 소개되어 있는 대학의 입학전형 정보에 따라 자신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가 요구하는 시험과목을 준비하면 되므로, 시험의 전 과목을 준비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학입시센터시험 결과를 국·공립대학은 반드시 대입전형에 반영해야 하지만, 사립대학은 반영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라. 대입준비과정의 운영

□ 이밖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식학제에 포함된 제도인 중등교육 이후 후속과정(The Post-secondary Level)으로 대학입학 준비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중등학교의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이는 직접적인 대학입학 전형방식은 아니지만 대학입시라는 목표를 위해 중등교육이 왜곡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영국의 GCE A-level 준비과정인 '6형식학교(6th Form School)', 프랑스의 '리세(Lycée) 진학반', 독일의 '김나지움(Gymnasium) 상급반' 등이 후속 중등교육과정의 전형적인 사례임

○ 대입준비과정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전문교육기관인 대학과 보통교육기관인 중등학교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
-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함
- 대학으로서는 충분한 수학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음

2. 미국의 대입전형 제도

가. 대학 입학전형의 체계

□ 입학전형의 방법

○ 미국은 3,20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이 다양한 입학전형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함. 선발방법은 주(州) 및 개별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무시험 전형과 경쟁적인 시험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무시험 전형

- 중등학교의 이수과목과 이수단위의 일정조건을 설정하고 그 이수상황을 전형기준으로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주(州)가 인정하는 고교졸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개방형이 있음
- 기준 이상 합격형: 입학요건으로 정한 수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자 전원이 입학할 수 있거나 선착순 선발에 의해 입학함, 학사과정 중심 주립대학에 주로 분포됨
- 개방형: 학습능력에 크게 관계없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킴, 주로 커뮤니티 칼리지가 이에 해당됨

○ 시험 전형

- 중등학교 학업 성적 백분위(High School Rank Percentile, HSR), 전문시험기관이 시행하는 대입 표준화검사(예: SAT와 ACT)[9] 성적, 면접 결과, 고교 교사들의 추천서 등을 반영하여 입학사정관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규모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전형제도임

□ 전형자료간 우선 순위

○ 전형자료간 우선 순위는 대학마다 다름

○ 추천서 또는 면접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생생활기록부(학교생활의 충실도 기재), 학생의 신청서, 고교 학업성적, 대입 표준화검사(SAT나 ACT)의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

9)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한 수학능력 검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오랜 역사(1900년부터 실시)를 가지고 있는 학업적성검사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와 학업성취검사인 ACT(American College Testing)가 가장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검사들의 결과가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나 중등학교 수료시험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님

- SAT는 대학간 협의기구인 대학위원회(Co-llege Board)가 개발 및 주관하는 검사이며, 대학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실제 시험을 실시함
- SAT와 ACT는 1994년 5월부터 통합되어 SAT1과 SAT2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음
- SAT 1: 종전의 SAT를 명칭 변경한 것임. 일반적인 학업능력이나 적성평가에 관심을 두고 주로 추론능력을 평가하며, 언어능력평가와 수리능력평가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자는 논리적 사고력을 위주로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며, 후자는 수리적 사고력 위주의 평가임. 최근 선택형 위주에서 주관식 문제를 포함시키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음
- SAT 2: 종전의 ACT의 명칭을 변경한 것임. 교과내용평가 혹은 학업성취평가에 초점을 둠. 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 등의 과목별 학력평가시험으로, 지식의 정도와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허가나 학과배정을 위하여 한 개 이상의 교과목 학력평가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 학생들이 이 시험에 응시함. 여러 교과목의 평가결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대학도 있고, 학생이 선택한 한 두 개의 교과목 성적만을 고려하는 대학도 있음

□ 입학전형 기간

○ 입학전형기간은 대학마다 다르나, 대체로 12월에서 1월까지 서류제출을 마감하고 합격여부는 4월에서 5월중에 개인에게 통보됨

○ 이런 과정을 거쳐 무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1~2년간의 탐색과정을 거치며, 대체로 2학년 말에 전공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됨

나. 학생 선발의 원리

□ 표준화된 수학능력 시험 성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다양한 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미국 대학의 학생 선발의 특징은 '자유재량(Discretion)'과 '불투명성(Opacity)'으로 정의됨[10)]

○ '자유재량'이란 대학의 입학사정관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뜻이며,

○ '불투명성'이란 선발의 내부과정이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되고 있지 않는다는 뜻임

□ 미국의 대학별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명문 사립대학의 경우 명문가나 유명 동문의 자녀의 입학을 우대하거나 공개적인 기부금 입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주요 선발기준인 개인의 잠재력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함

○ 한편 소수인종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들을 배려하는 사회정책(Affirmative Action)등도 고려하여 입학전형을 운영함으로서 전반적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주립대학들은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보다 엄격하게 선발의 공적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입학사정관이 지역 내 학생들의 다양한 입학기회를 보장함

---

10) 이 개념은 미국의 교육사회학자 J. Karabel이 다음의 저서에서 소개함. J. Karabel, 『The Chosen: The Hidden History of Admission and Exclusion at Harvard, Yale, and Princeton』, Houghton Mifflin, 2005.

Ⅳ.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

1. 입학사정관의 역할과 관리

가. 입학사정관의 역할

□ 다음은 U.C. Berkeley의 「입학전형·등록·준비위원회(Commission of Admissions, Enrollment and Preparatory, AEPE)」가 마련한 신입생 선발기준임[11]. 이 기준을 미국 내 상위권 대학의 대표적인 전형기준으로 볼 수 있음

○ 학력이 뛰어난 학생의 선발을 중시하지만 선발과정에서 지원 학생의 향후 대학생활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선정기준을 마련함

○ 각각의 지원자는 개별적으로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지원자의 학력 등 모든 성취도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 기회의 활용과 도전 정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UC Berkeley는 주립대학교로서 수업료 등의 지불능력 여부는 선발기준이 될 수 없음

○ 대학교육을 통해 얻은 학습결과를 통하여 장차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사회에서의 지적·문화적·사회적·정치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함

○ 다양한 문화, 인종, 지역, 사회, 경제적 특성을 포함하는 학생 집단을 선발하며, 그 절차는 관련 주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학력수준과 기타 대학 수학을 위한 준비가 우수하여 졸업 시까지 그 우수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함

○ 평가절차는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11) 정진곤, 「미국대학의 학생선발방법과 한국입시제도에의 시사점: Berkeley, Stanford와 Washington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한국교육평가학회, 2005.

○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학이 설정한 고교등급도 고려함

□ 미국의 대학에서 입학사정관[12]이 대입전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음. 대체로 미국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이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명문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력점수 이외에도 봉사실적과 음악·미술·문학·체육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리더쉽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함

- 입학사정관은 전문가로서 학생들이 제출한 원서·고등학교 기록·지원학생의 출신고교 교육방침·부모의 교육수준·성장한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주요 정성적 기준으로 분석·평가함

○ 고교의 학력등급과 교육여건을 고려하기도 하며, 특히 주립대학은 인종이나 종교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학생집단이 구성되도록 선발함

□ 입학사정관은 선발과정 전반에 걸쳐 서류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학정책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따르되 판단은 전적으로 입학사정관의 자율사항임. 입학사정관이 담당하는 임무는 다음과 같음[13]

○ 서류심사를 통한 학생 선발

○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실태 파악

○ 비인지적(non-cognitive) 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선발기준의 설정

---

12)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초창기에는 진학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한다는 뜻에서 주로 Admission Counsellor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Admission Officer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함. 이밖에도 입학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뜻으로 Reviewer나 Reader라고 부르기도 함

13) 1937년 「전미입학사정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NACAC)」가 설립되어, 입학사정관들의 업무전문성을 증진시키고 필요한 지원을 하며 고도의 직무기준을 정립하고 있음

나. 입학사정관의 관리

(1) 채용

□ 입학사정관들은 표준적인 자격기준이 아닌 개별 대학의 기준에 따라 채용되고 있으며, 대학들은 채용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함

○ 채용 자격: 대학교육 학위소지자 및 유관분야 경력자(최소 2년에서 10년)를 선호함

○ 채용 방법: 평시에는 입학처에 정규직 입학사정관들이 고용되어 있고 수시 채용을 하며, 입학철에는 계약직으로 다수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함

- 입학사정관 채용에는 기회 균등 및 차별 금지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며, 학교 내 사정관들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 인종 혹은 여성을 우대하는 사례도 있음
- 입시철이 되면 전직 입학처 직원, 전·현직 고등학교 대입상담 전문가, 민간 대입상담 전문가, 정년퇴임한 교장이나 교사, 교육학 전공의 대학원생 중에서 임시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기도 함[14]

○ 지위와 보수: 지역, 학교, 경력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전임교수 수준의 대우를 함

□ 모집공고 사례

○ 전미입학사정관협회 홈페이지에 실린 모집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음[15]

14) 양성관·정일환,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제도 분석: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2007; 미국 입학사정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nacacnet.org

15) 전미입학사정관협회 홈페이지의 모집광고, http://www.nacacnet.org/

[사례 1] 오레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Oregon) 입학담당 부처장(Associate Director for Recruitment)모집공고 (2009.2.19) / http://www.oregonstate.edu

- 오레곤주립대학교는 지역관리 시스템 및 전국 수준의 대입전형 프로그램을 포괄적·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학생 선발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그리고 장·단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가로서의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지원자 풀의 향상, 입학 및 편입학 상담, 전화 상담, 동문회 협력 및 모교방문 프로그램 지원, 입학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과 리더십 제공함
- 5명의 행정관과 1명의 선별된 직원을 직접 관리하며, 이밖에도 5명의 행정관을 간접적으로 감독함
- 연봉은 기본급 6~7만 달러이며 경력에 따라 추가됨
- 기회 균등 및 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고용함

[사례 2] 세인트메리대학교(Saint Mary's college, 켈리포니아州 소재)의 수석 입학사정관/입학처 부장(Senior Admission officer/Assistant Director of Admission) 모집공고 (2009.3.4) / http://www.stmarys-ca.edu

- 대졸 이상, 2~5년간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경험 혹은 고객 서비스분야의 경력자
- 뛰어난 화술과 문서작성 능력 겸비, 대인관계와 조직 적응력 요망
- 교양교육의 중요성 인식, 다양성 존중, 독립적이면서도 협조적인 업무수행 능력, 높은 수준의 독창성과 열정 그리고 유연한 성격 등이 채용 시 아주 중요한 평가기준임
- 문서작성 능력, 자료관리 능력, 이메일과 인터넷 활용 능력
- 보안 유지 및 자유 재량권에 대한 조절 능력
- 출장, 야근, 주말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운전면허증 및 자기소유 차량 필수

[사례 3]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학부 입학담당 부국장(Associate Director for Recruitment –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 모집공고 (2009.3.2) / http://www.unc.edu
• 석사학위 이상, 입학업무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자 • 뛰어난 인재 확보 및 다양성을 지향하는 입학제도를 설계하고, 평가와 시행을 담당할 수 있는 자 • 작문, 말하기, 기획력,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자 • 다양한 배경의 우수 학생을 유치한 경험과 다른 근무자들을 이끌고 동기부여를 시키며 같이 협력 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함

(2) 교육

□ 미국의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을 채용한 후 충분한 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입시사정 업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입학사정관별 편차와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음[16)]

○ 입학사정관 교육을 통하여 입시사정 과정에서 입학사정관들 간의 판단이 불일치하여 제3의 입학사정관의 판단을 추가로 요구하는 비효율성을 줄임

- U.C. 버클리대학교의 경우 1998년도에는 약 6% 정도의 사정업무가 제3의 입학사정관에게 전달되었으나, 2001년에는 3%, 2002년에는 1.3%로 줄었음

□ 대학형태별 입학사정관 교육방식

○ 입학사정관의 교육유형은 설립유형과 규모로 구분하면 아래과 같이 (1) 대규모·복수캠퍼스형(주립과 사립 포함), (2) 주립대학형, (3) 중·소규모 사립대학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17)]

16) 양성관·정일환, 2007.

17) 다음의 논문에서 인용함; 양성관·정일환, 같은 글.

교육방식 1: 대규모(복수캠퍼스) 대학

규모가 아주 큰 대학의 경우 135명의 입학사정관이 있는 곳도 있으며, 대규모 대학의 입학사정관 교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짐

· 모든 입학 사정관들은 교육교재를 필독함
· 모든 사정관은 3시간 내에 대학입학을 결정하는 과정을 훈련 받음
· 무작위로 선정된 20개의 지원파일을 가지고 평가 실무를 연습함
· 12-15명이 조를 이루어 타인의 평가 점수를 검토하고 일치 정도를 판별. 이 교육에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파일을 검토하여 모두 적합한 판정을 한 사정관은 입학사정관 자격을 인정받음. 다른 판정을 한 사정관들은 그 다음 파일들을 갖고 반복 평가 연습을 통해 자격인정을 받음

교육방식 2: 주립대학

정규직과 임시 채용된 입학사정관 수는 평균 70명선이며, 입학관리처의 장이 입학사정관 교육과 입학사정 과정을 감독함. 입학사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입학사정관은 일주일 정도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받음

· 대학의 미션과 목표 소개
· 지난해 신입생의 특징 설명
· 시험성적의 전국, 주 단위의 경향과 관련된 인구배경자료의 특성 분석
·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대한 분석
· 학교프로파일 검토하는 방법 숙지
· 입학사정관이 직접 입학지원서 작성을 연습
· 샘플 성적표를 분석하고 사정 기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성적을 재산출
· 대입전형요소에 대한 심층 검토
· 학생이 작성한 논문의 평가요소 교육
· 각 점수대에 해당하는 샘플 지원파일 평가
·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분임토의
· 샘플 파일에 대한 개별 사례 연구

교육방식 3: 중 · 소규모의 사립대학
분석적 평가와 종합적 평가를 동시에 활용하는데 정규 직원인 고경력 입학사정관(10명)과 외부의 시간제 입학사정관(5명), 입시기간 중 임시 채용된 50여 명의 사정관이 대입 지원자 파일을 검토함. 많은 경험을 가진 내부 입학사정관도 규정상 임시 채용된 사정관들과 함께 매년 직원 연수를 통해 입학사정과 관련된 교육을 받음. 입학기간에는 평균 70명 정도의 입학사정관이 있으며, 입학관리처장이 사정관 교육과 입학 사정 과정을 감독함. 또한 입학사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입학사정관은 일주일 정도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받음 · 지난 5년간 신입생의 특성 파악 · 각 영역에 대한 분석 기준 파악과 함께 전체적인 분석 기준 확인 · 작년 지원자를 대표하는 샘플 지원 파일 분석

다. U.C. Berkeley의 사례[18)]

□ U.C. Berkeley는 캘리포니아주의 문화·인종·지역·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재능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주립대학으로서 사립대학보다 엄격하게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학생선발 및 입학전형 방법

○ 학생은 매년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1년에 1회 지원하며, 대학은 다음해 3월 마지막 토요일에 신입생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함

○ 지원학생은 지원서에 가정환경, SAT·ACT 등 시험성적, 수상경력, 특별활동, 지도자 역할 및 봉사활동 등을 기재하고, 두 종류의 자기소개서를 1,000자 정도로 기술하여 첨부하여 제출함

○ 입학사정관은 지원서를 검토하면서 학업성적·다양한 업적·도전적 태도·지역

18) 김정희, 「미국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실제」, 『외국교육동향』, KEDI, 2008.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함

□ 입학담당 조직

○ U.C. Berkeley에는 60여명의 정규 직원(입학사정관 포함)이 입학담당 부서에 근무하고 있음

○ 입학철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는 입학사정관을 110명 정도 추가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함

○ 매년 8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하며,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매주 학술회의 및 연수가 실시됨

○ 2008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은 약 48,000장의 지원서를 정독하여 평가했으며, 1점 내외의 오차범위를 보인 지원서는 12명의 선임사정관이 다시 평가를 했음

□ U.C. Berkeley가 요구하는 입학사정관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입학사정관은 입학절차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다른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대되며,

○ 학생들과 다양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 많은 양의 업무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특히 1인 평균 3,000건의 지원서를 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 학생 개개인마다 다른 배경, 특히 경제적 배경을 잘 고려하여 입학절차와 방법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정신과 컴퓨팅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잦은 출장과 추가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 특히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버클리는

지원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함)

2. 입학사정관의 자율성과 책임

□ 교육철학이 정립되고 사회적 신뢰를 받는 대학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입학사정관에게 최대한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된 미국 대학에서도 이런 당위적인 조건은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졌음

○ 1990년대 말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과정에 대해 제기된 2건의 위헌 판결 사례를 통해 입학사정관이 공익을 추구하면서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기초와 대학의 책임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

가. Gratz 사건[19)]

□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는 입학 전형에서 인종에 따른 가산 점수를 부여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임

○ 미시간대학교는 150점 만점의 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100점 이상을 얻은 지원자에게 입학을 허가함

○ 소수 인종의 지원자 모두에게 20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소수 인종의 입학이 용이한 편이었음(SAT 만점자에게 12점을 가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가산점임)

□ 1997년 10월 미시간주에 거주하고 있는 백인들인 Jennifer Gratz와 Patrick Hamacher은 미시간대학교의 학부 입학사정에서 대학이 사용한 소수집단우대

19) Gratz v. Bollinger, 539 U.S. 244 (2003)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헌법」의 평등보호 조항과 1964년 「민권법」 제6장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20]

○ Gratz와 Hamacher은 각각 1995년과 1997년에 미시간대학교의 인문·과학·예술대학(College of Literature, Science, and the Arts: LSA)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된 바 있음

□ 이 소송에 대하여 2003년 연방대법원은 학생집단의 다양성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공익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20점씩을 자동 부여한 제도는 정합하게 설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부의 입학제도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림

나. Grutter 사건[21]

□ 1996년 미시간대학교 법과대학에 불합격한 백인 여성 Barbara Grutter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함

○ 연방대법원은 2003년 미시간대학교 법과대학이 다양한 인종으로 학생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입학전형 방법이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이 판결의 취지는 미시간대 법과대학의 입학전형이 인종을 유일한 전형요소로 보지 않고 개개인 지원자를 개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집단의 다양성을 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소수집단 학생에게 의도적인 차별을 하지 않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제도라고 평가한 것임

□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Gratz 사건과 Grutter 사건에 대하여 각각 위헌과 합헌으로 판결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20) 김영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合憲性 基準」, 『公法學硏究』, 第8卷 第4號,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21) Grutter v. Bollinger, 539 U.S. 306 (2003)

○ 대학이 입학전형의 방법으로 소수집단우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이며 필요한 것임

○ 그러나 인종집단에 대한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임

○ 소수 인종이라 하더라도 지원자 개개인별로 다른 전형요소들을 고려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우대조치임

□ 이런 판결들은 입학사정관의 업무의 정당성과 자율성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고 제재조치의 추가로 이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별 지원자를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의 권한과 자율성은 보다 더 증대되었음[22)]

○ 소수인종 우대정책과 같은 법률적·사회적 합의와 개개인 지원자의 입장 사이에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 판례로 보임

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의 자율성과 책임

□ Gratz 사건과 Grutter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대학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과 같은 공익추구 입학전형 기준을 추구하되, 입학사정관은 전문적·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개별 지원자의 선발에 임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킨 판례임. 또한 국가는 대학이 추구할 공익에 관하여 명료한 법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임

□ 이후 미국의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음

○ 미국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전적으로 보장되며, 학교는 선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음

22) 염철현,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의 적용에 따른 연방법원의 판결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2006.

○ 인종·성·연령·장애·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Affirmative Action)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Gratz 사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시건 대학이나 미국 주립대학 입시 전반에 걸친 신뢰성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입학사정관의 공정성과 자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오히려 보다 뛰어난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여 입학사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Ⅴ. 시사점과 제언

1.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미국 대학의 대입전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적 지원체제

○ 국가는 소수집단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등을 통하여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고 교직원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SAT I과 SAT II 등 표준화된 학력검사를 운영하여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함

○ 대학은 설립 형태와 지역, 교육목표 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질과 특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선발방법으로 표준화된 학력점수도 활용하지만 평가 유형(인지적 성적 이외의 행동특성 평가 자료)과 자료의 생성자(학생 제출 자료, 고등학교의 기록, 대학의 자체 생산 자료)에 따라 다양한 자료들을 고르게 활용함

○ 이밖에도 지역별, 특성별 대학협의체는 회원 대학의 교육환경과 성과에 대하여 엄격한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교육 및 학생선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 입학사정관의 책임과 자율성

○ 자격: 각 대학의 고유한 선발 원칙에 따라 입학사정관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학문적 능력과 업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함

○ 채용방법: 특히 주립대학은 입학사정관을 채용할 때 인종과 성을 포함하여 다원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고 함

○ 교육: 정규직원인 입학사정관은 평상시 전년도 입학사정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학술적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 입학사정관들과 입시기간 중 임시 채용된 입학사정관들은 입시 직전에 체계적인 실무 교육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오류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함

○ 업무재량권: 엄격한 채용관리와 교육을 통해 입학시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의 선발재량권은 최대한 존중됨

□ 사회적 신뢰 구축

○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통해 미국 법원은 학생선발의 공적 목적과 자율성 간의 합리적인 조화점을 제시했고, 미국민은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선발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음

2.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가. 정착 조건

□ 그동안 각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23)]

○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의 확보가 필요함. 입학사정관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23) 교육인적자원부·경기도교육청, 「2006 고교-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I」, 2006; 김민남, 「학교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교육이력철 도입·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4-지정-35, 교육인적자원부, 2004; 김해성,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06;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방향연구」, 정책연구 2004-08, 2004; 「입학사정관 제도가 성공하려면」, 『교육마당21』, 2008.2

전문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배경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학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할 것임

○ 각 대학은 학생 선발에 관한 정확한 지침과 기준을 설정해야 함

○ 입학사정관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주어져야 함. 참고로 외국의 유명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그 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가 관행이라고 함

○ 외국의 경우 국가나 지역의 고교자격시험이 존재하는 경우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시 그 사회적 평가기준도 충분히 존중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오랫동안 국가수준의 평가체제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존 국가수준 평가의 가치도 존중하면서 대학 자율의 입학사정관제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대입전형의 신뢰를 얻어야 함

○ 고등학교의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기록유지도 중요함. 고교 교사는 입학사정관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대학에 제공해야 함

○ 단기간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대학들이 그 과정에서 충분한 비용을 투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나. 과제

□ 입학사정관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고교까지의 학업성적만을 전형기준으로 삼지 않고 선발대상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여 선발 후 대학교육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고 계층·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우수한 학생에게 대학입학의 기회를 주려는 균형선발의 취지를 가지고 있음

□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용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교협은 적절한 지원체제를 확보해야 하며 대학은 공개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입학사정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대학 및 사회의 풍토 조성도 필요함.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정부는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율적인 학생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구체적으로 향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중·단기 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대입수능시험을 대입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입자격시험제는 정부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선택이며,
- 대학은 대입자격시험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며 그 밖의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학생선발 과정을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입학사정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대학도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정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에 의한 선발을 하되 일정한 비율은 지역과 계층별로 분배하도록 권고함

○ 중등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록한 다양하고 풍부한 기록을 대학이 신뢰하고 입학사정관에 의한 선발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교협은 각 대학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선발·교육·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도입 초창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대학의 입학사정관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원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입학사정관 자격 및 윤리 기준 마련

○ 입학사정관 업무절차 표준지침서 작성

○ 입학사정관 인력풀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요청하는 대학에 제공

○ 각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공통교육 제공

□ 대학은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되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고 대교협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 입학사정관에 의한 선발전형에 개입될 수 있는 사교육의 영향이나 선발전형의 임의성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 각 대학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채용해야 함

○ 채용 후 체계적인 입학사정관 교육시스템도 마련해야 함

○ 특히 오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운영모델을 만든 미국과 달리 단기간 내에 재도로 도입·운영하려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대학은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 정보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 선발의 원칙과 선발 절차 및 기준의 공개
- 선발 결과 및 차년도 계획의 공개

□ 이밖에도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권한을 중시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칭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뜻의 사정(査定)보다는 '됨됨이나 재능 따위를 가려 뽑는다'는 뜻의 전형(銓衡)을 사용하여 입학전형관(入學銓衡官)으로 용어를 변경함

□ 결론적으로 대학은 입학사정관제가 우수한 잠재능력의 소유자를 다양한 경로와 각계각층에서 발굴하도록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정부는 대입선발 구조의 큰 틀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입시사정관제도가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수시전형제도에는 농어촌전형, 지역균형, 전문계고전형 등이 있음. 이런 정책방향은 미국의 소수 인종 우대정책의 취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유연하게 운영한다면 계층 및 지역의 교육기회를 고르게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참고문헌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ed.gov/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NACAC), http://www.nacacnet.org/

「대입 자율화와 입학사정관 제도」, 『교육마당21』, 2008.2.

「입학사정관 제도가 성공하려면」, 『교육마당21』, 2008.2.

교육과학기술부, 「조전혁의원실 제출 자료」, 2009.10.

교육인적자원부, 「대입 자율화와 입학사정관 제도」, 『교육마당21』, 2008.2.

교육인적자원부, 「입학사정관 제도가 성공하려면」, 『교육마당21』, 2008.2.

교육인적자원부·경기도교육청, 「2006 고교-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I」, 2006.

권승아·성태제,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 실태와 입학사정관의 인식, 『교육학연구』, 47-1, 2009.3.

김미숙·강영혜,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김민남, 「학교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교육이력철 도입·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4-지정-35, 교육인적자원부, 2004.

김영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合憲性 基準」, 『公法學硏究』, 第8卷 第4號,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김정희, 「미국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실제」, 『외국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2008.10.23.

김해성,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06.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방향연구」, 정책연구 2004-08, 2004.

양성관·정일환,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제도 분석: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2007.

염철현,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의 적용에 따른 연방법원의 판결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2006.

이종승 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전현웅 외,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복지행정연구』, 제23집, 2007.

정진곤, 「미국대학의 학생선발방법과 한국입시제도에의 시사점: Berkeley, Stanford와 Washington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한국교육평가학회, 2005.

최병기,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분석 및 대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1.

최병기, 「2010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및 효율적 대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2009.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선동의원실 제출 자료」, 2009.10.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09.4.9.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	김종연 최준영
제2호	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	김종연 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	김영일 신종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	김준 외 7인
제7호	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	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	김준 외 7인
제1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2008.12.11	정민정 김남영
제13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	김 준 배민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충렬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호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	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	김종갑 외 3인
제22호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	유재국 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	임동춘 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	이만우 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제35호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2009. 9. 3	이현출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6호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009. 9.22	정민정 김상욱
제37호	미국하원의 발언관련 규범	2009. 9.28	전진영
제38호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28	김남영
제39호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09.10.15	유해미
제40호	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대응	2009.10.16	이만우 허종호
제41호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2009.10.20	박충렬 정민정
제42호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09.10.21	김 준 최준영
제43호	희유(稀有)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0.27	김경민 신가은

현안보고서 제44호

발 간 일	2009년 11월 10일
발 행	임종훈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교육과학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자료마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31-000639-14

ⓒ 국회입법조사처, 2009

현안보고서 제44호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005-3215